

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주민 복지 증진,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읍·면·동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읍·면·동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전반)

☐ 개정조례안: 별첨

☐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☐ 관계법령발췌서: 별첨
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별표 3

☐ 관련사업계획서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별첨

☐ 사전예고 결과 : 예정

- 입법예고기간 : 2026. 9. 23. ~ 2026. 10. 13. (20일간)

☐ 조례·규칙 심의 결과 : 예정

- 심의회 개최일: 2026. 10월 중

☐ 기타 참고사항: 별첨

- 현행 조례
- 규제영향분석 결과서

※ ‘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’ 및 ‘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’에 따라,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의견서는 조례규칙 심의 전 첨부 예정

과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과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”을 “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리·통”을 “통·리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”를 “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”로, “각 호와 같은”을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새마을운동조직 회원”을 “새마을회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실비 지원)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·면·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새마을회원이새마을운동”을 “새마을운동”으로, “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”를 “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”로, “대하여 포상 할”을 “포상할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자치협력과 ☎ 940-4342
입안자	자치협력과장	정 구 생
	주민자치팀장	장 기 혁
	담 당 자	김 명 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	-----	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	---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(읍·면·동 및 <u>리·통</u>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		1.	-----	-----
			-----	-----
			-----	<u>통·리</u> -----
			-----	-----
2. 3. (생략)		2. 3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지원)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	제3조(지원)	-----	-----
			-----	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-----
			--	<u>각 호의</u> -----
			-----	-----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그 밖에 <u>새마을운동조직</u>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		4.	-----	-----
			--	<u>새마을회원</u> -----

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<신 설>	----- -----
	제3조의2(실비 지원)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·면·동 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한 새마을회 원에게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를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포상) 시장은 <u>새마을회원이</u> <u>새마을운동을</u>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<u>기여를 한 사람</u> <u>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</u> 할 수 있다.	제6조(포상) ----- <u>새마을운동</u>--- ----- ----- <u>기여한 개인 또는</u> <u>단체에</u> -- <u>포상할</u> ----- ----

□ 관계법령발췌서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(약칭: 새마을조직법)

[시행 2019. 12. 10.] [법률 제16766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-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-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「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3조의2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 지원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파주시 새마을회원 500명의 회의 참석을 고려한 실비 추계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산출기초	사업비	비 고
총 계		120,000	
읍면동 새마을회 회의 지원	- 회의 참석 실비 20,000원×500명×12월	120,000	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
총 소요액	-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48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7년 예산안 일반회계로 편성 추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○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장 정구생 주민자치팀장 장기혁

□ 기타 참고사항: 현행 조례

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에 따라 파주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(읍·면·동 및 리·통 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새마을회원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)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
2.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
3.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
4.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

제4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5조(보험가입)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·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과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☐ 기타 참고사항 : 규제영향분석심사 의견서

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

1. 자치법규명	「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 (일부개정)	
2. 소관 부서	부서명	자치협력과
	담당	팀장 장기혁 담당자 김명채
3. 관련법령 등	○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 ○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별표 3	
4. 주요골자	○ 읍·면·동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 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(안 전반)	
5. 심사의견	○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- 「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은 주민 복지 증진,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읍·면·동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-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	
6. 심사담당자	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(4171)	